

조직개편에 따른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의안 번호	1233
----------	------

제출연월일 : 2023년 8월 14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에서 2023. 7월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 변경 등의 조문 내용을 일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의 권익증진에 기여

2. 주요내용

2023. 7. 1. 조직개편에 따른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의 부서 명칭 등 일괄정비(안 제2조~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별첨 5】

-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비교표
- 법제처 의견제시 안건번호 의견19-0028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별첨 2】

다. 협 의: 관련부서와 협의 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결과: 미실시 【별첨 3】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2) 교육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해당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5) 학생인권영향평가: 의견없음 【별첨 4】

조직개편에 따른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에 대한 일괄정비를 통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교육행정국장” 을 “안전총괄담당관” 으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을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후단 중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을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으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교육재정과장” 을 “청사이전추진단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재산관리담당사무관” 을 “청사이전기획담당사무관” 으

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재산관리담당사무관” 을 “청사이전기획담당사무관” 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2】

조직개편에 따른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이 아니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의 비용추계서 첨부조건에 해당하지 않음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은 우리교육청 조례 내 조직개편 따른 조례 내 부서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내용으로, 별도의 재정지출 증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 주무관 한동희 (02-2282-8649)

【별첨 3】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제14조 관련)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실시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별첨 4】

자치법규 · 단위사업
학생인권영향평가 검토의견서

자치법규 (단위사업)	조직개편에 따른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담당부서	행정관리담당관	담당자	직급	주무 관	성명	한동희 (02-2282-8649)
평가담당	학생인권위원회 학생인권영향평가 소위원회	위원장 마한열				
해당조항	검토의견					검토결과
제1조부터 제4조까지	<p>-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교육 학예에 관한 조례에 대한 일괄 정비를 통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제3항 제1호 중 “교육행정국장”을 “안전총괄담당관”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제12조 제2항과 제19조 제2항 후단 중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을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 운영 조례」 제6조 제1항 제2호 중 “교육재정과장”을 “청사이전추진단장”으로, 같은 조 제4항 중 “재산관리담당사무관”을 “청사이전기획담당사무관”으로, 제10조 제1항 제2호 중 “재산관리담당사무관”을 “청사이전기획담당사무관”으로 각 규정함</p> <p>- 이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p>					원안동의

【별첨 5】

관계법규

1 조직개편

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②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③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 9. 1.] [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1045호, 2022. 7. 21., 일부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 7. 1.] [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1059호, 2023. 6. 29., 전부개정]
제10조(교육행정국) ① 교육행정국에 학교지원과, 교육재정과, 교육시설안전과 및 미래학교추진단을 둔다 ④ 교육재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8.20.> 10. 서울학교안전공제회에 관한 사항	제7조(안전총괄담당관) ① 안전총괄담당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안전총괄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교육감을 보좌한다. 6.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에 관한 사항
제9조(평생진로교육국) ① 평생진로교육국에 평생교육과·민주시민생활교육과·진로직업교육과· 체육건강문화예술과 및 특수교육과를 둔다.<개정 2014.12.24., 2019.2.18., 2022. 2. 18.>	제10조(평생진로교육국) ① 평생진로교육국에 평생교육과,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진로직업교육과, 체육건강예술교육과 및 특수교육과를 둔다.
제10조(교육행정국) ① 교육행정국에 학교지원과, 교육재정과, 교육시설안전과 및 미래학교추진단을 둔다.<개정 2014.12.24., 2017.6.30., 2017.12.18. 2019.2.18., 2022 .2. 18.> ④ 교육재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8.20.> 16. 신설학교 부지 조성 및 취득 17. 교육행정기관·직속기관 부지 조성 및 취득	제11조(교육행정국) ① 교육행정국에 학교지원과, 교육재정과, 교육시설안전과, 미래학교추진단 및 청사이전추진단 을 둔다. ⑦ 청사이전추진단장 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청사이전 계획 수립 2. 신청사 사무공간 배치 등에 관한 사항 3. 교직원 치유·회복 연수원 건립에 관한 사항 4. 신청사 건립 시설·공사 집행·관리 5. 스마트오피스 및 청사출입 보안시스템 구축 6. 그 밖의 청사 건립·이전에 관한 사항

2 조직개편 일괄개정(법제처 19-0028. 2019.2.21.)

일반적으로 자치법규를 개정할 때에는 하나의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개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둘 이상의 자치법규를 개정할 때에는 개정 자치법규안을 따로 입안하여 개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어떤 자치법규를 개정할 때 해당 개정사항과 관련되는 다른 자치법규의 규정을 동시에 개정해야 할 경우, 공통의 개정 목적을 갖고 있는 경우 등 개정 대상 자치법규들 간에 공통의 개정 요인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자치법규 개정의 경제성과 능률성을 위하여 일괄개정 형식으로 둘 이상의 자치법규의 개정안을 하나의 개정 자치법규안에 포함하여 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2018 자치법규 길라잡이」, 법제처, 2018, p. 362. 참조).

살피건대, 이 사안에서 일괄개정 형식으로 개정하려는 목적은 해당 자치법규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상위 법령 및 **조직개편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거나** 자치법규 문장에 쓰이는 어려운 한자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기 위한 것인바, 이는 현행 자치법규의 형식적인 법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내용 변경이 없는 정비적인 사항의 개정이라는 공통의 개정 요인이 있다고 할 것이고, 개정 대상 자치법규들을 일괄 개정하는 경우 개정의 경제성과 능률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위법령의 제명 및 근거 조문 개정사항 정비,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 **2019. 1. 1.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의 개정사항 정비를 위해서 일괄 개정 방식으로 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